

의안번호	2124869
의 퇴 인	진선미의원
회 답 일	2023. 7. 11.
추 계 번호	23E2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축소,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2억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5년 2,923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조 542억원(연평균 4,1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누적	연평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축소 및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 (안 제52조제4항)	-2,923	-3,423	-4,008	-4,693	-5,496	-20,542	-4,10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제4항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축소 및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 - (현행) 소득공제율 40%, 연간 공제한도 400만원* *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2023년부터 적용) - (개정안)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되,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으로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th><th>현행</th><th>개정안</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축소 및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td><td>대상</td><td>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td><td>총급여액 2억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td></tr> <tr> <td>공제율</td><td>40%</td><td>80%</td></tr> <tr> <td>공제한도</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축소 및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2억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율	40%	80%	공제한도	400만원	600만원	
		현행	개정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축소 및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2억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율	40%	80%														
	공제한도	400만원	600만원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2조제4항(특별소득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
 -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징수기준)
 - 근로소득세 세수효과는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5년에 발생
 - 개정안 부칙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6~2021년 결정세액 있는 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 연평균 증가율(17.1%)을 따를 것으로 가정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무주택 세대주¹⁾인 근로소득자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해당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적용 주택규모)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²⁾
 - (공제한도) 주택청약(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³⁾
 - 소득공제금액 = Min{(주택청약(마련)저축 납입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40%, 400만원}

1)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2조제6호,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경우 100㎡

3) 주택청약(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기준

□ (감면 실적) 2016~2021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 인원은 연평균 14.9%, 공제금액은 연평균 14.6% 증가

○ 적용 인원 및 공제액은 증가 추세이지만 1인당 공제액 변화는 크지 않음

[표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인원 및 공제 금액: 2016~2021년

(단위: 명, 백만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적용인원	476,724	525,604	623,775	766,302	893,437	1,026,696	718,756
(증가율)	9.7	10.3	18.7	22.8	16.6	14.9	14.9
소득공제액	738,449	818,126	984,064	1,187,580	1,315,130	1,460,592	1,083,990
(증가율)	10.8	10.8	20.3	20.7	10.7	11.1	14.6
1인당 공제액	1.55	1.56	1.58	1.55	1.47	1.42	1.52
(증가율)	1.0	0.5	1.4	-1.8	-5.0	-3.4	-0.2

주: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한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1년 귀속 기준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적용자(78.3만명) 중 주택청약(마련)저축 공제 적용자는 25%(19.7만명) 수준이며, 1인당 공제금액은 0.5~2.6백만원 수준

[표 3]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현황(2021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구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공제인원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 ¹⁾		1인당 공제금액 ²⁾
			공제인원	공제금액	
총 계	782,756	1,156,158	197,260	86,745	1.48
1천만원 이하	—	—	—	—	—
1.5천만원 이하	12	6	0	0	0.50
2천만원 이하	1,923	1,571	273	78	0.90
3천만원 이하	68,297	72,979	14,083	5,152	1.25
4천만원 이하	149,416	166,656	46,287	19,050	1.43
4.5천만원 이하	92,688	116,904	32,082	13,994	1.70
5천만원 이하	86,850	121,953	29,805	13,332	1.90
6천만원 이하	137,724	213,545	46,625	21,511	2.11
8천만원 이하	137,861	240,027	28,077	13,617	2.06
1억원 이하	57,980	113,084	22	8	1.95
2억원 이하	45,691	98,994	—	—	2.17
3억원 이하	2,969	7,058	—	—	2.38
5억원 이하	1,006	2,512	—	—	2.50
10억원 이하	268	682	—	—	2.54
10억원 초과	71	187	—	—	2.63

주: 1)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자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에서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을 제외한 기준

1.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내역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의 상세

- 총급여(종합소득) 규모별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율 인상 전후 1인당 과세표준에 한계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 감소분을 산출한 후 적용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감소분 추계
 - 총급여규모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자의 인원,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자료를 이용하며 한계세율은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산출
 - 현행 공제율(40%) 기준 1인당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 확대(40%p)에 따른 추가 공제금액 산정
 -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
 - －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구간별 1인당 추가 세액이 현행 기준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결정세액만큼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가정
- (추계 방법) 2021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한 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액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개정 후 5년간의 세수효과 추계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021년 기준 1,555 억원으로 예상(상세내역 [표 5] 참조)
 - －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구간별 소득공제금액 합계액이 개정안의 공제한도(600만원)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최고 433만원 수준)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6~2021년 동안 결정세액 있는 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 연평균 증가율(17.1%)을 따를 것으로 가정

[표 4] 2016~2021년 결정세액 있는 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6~'21 평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 ¹⁾	525.1	604.9	736.8	923.5	1,014.6	1,156.2	826.8
증가율	14.9	15.2	21.8	25.3	19.3	20.4	17.1 ²⁾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2) 결정세액 있는 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의 2016~2021년 6개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2021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구간	1인당							세수효과
	현행 ¹⁾ 공제금액	추가 ²⁾ 공제금액	총 공제금액	현행 과세표준	개정안 과세표준	산출세액 변동분	결정세액 변동분	
	A	B	C=A+B	D	E=D-B	F	G ³⁾	
총 계	-	-	-	-	-	-	-	-155,458
1천만원 이하	-	-	-	-	-	-	-	-
1.5천만원 이하	0.5	0.5	1.0	4.3	3.8	-0.03	-0.02	0
2천만원 이하	0.9	0.9	1.8	5.4	4.5	-0.05	-0.03	-47
3천만원 이하	1.3	1.3	2.5	9.3	8.1	-0.08	-0.04	-2,343
4천만원 이하	1.4	1.4	2.9	15.6	14.2	-0.21	-0.14	-14,951
4.5천만원 이하	1.7	1.7	3.4	20.2	18.5	-0.25	-0.19	-11,242
5천만원 이하	1.9	1.9	3.8	23.5	21.6	-0.29	-0.22	-12,475
6천만원 이하	2.1	2.1	4.2	28.8	26.7	-0.32	-0.26	-23,248
8천만원 이하	2.1	2.1	4.1	40.1	38.0	-0.31	-0.27	-29,365
1억원 이하	2.0	2.0	3.9	58.1	56.2	-0.47	-0.47	-27,138
2억원 이하	2.2	2.2	4.3	92.0	89.8	-0.76	-0.76	-34,647

주: 1) [표 3]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합산 금액

2) 현행 공제율을 바탕으로 추정된 1인당 평균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공제율 확대(40%p) 적용

3) 결정세액 변동분 계산에 있어 개정안에 따라 산출세액이 감소할 경우 세액공제금액 또한 감소할 수 있음을 감안, 결정세액 중 일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전체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율(2021년 귀속 기준 51.9%)에 따라 비례변동한다 가정하여 계산

3) 결정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자 중 총급여규모 2억원 이하인 자에 한하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자는 제외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2억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액을 상향조정에 따라, 소득세는 2025년 2,923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조 542억원(연평균 4,1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누적	연평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축소 및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 (안 제52조제4항)	-2,923	-3,423	-4,008	-4,693	-5,496	-20,542	-4,108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문석휘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석휘	02-6788-4669	slugnoid@assembly.go.kr